

제 2422호
2016. 01. 01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전화: 3396-496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- 조 려
제130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2
- 규 칙
제66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7
- 고 시
제2015-117호 :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..... 12

<p>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</p> <p>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</p> <p>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</p>												
공 람												



조 례

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6년 1월 1일

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(인)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3호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제21호,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1.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
- 22.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
제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법제, 지방의회에 관한사항

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3.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사항

제7조 제2항 제14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취업지원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</p> <p>제5조(행정관리국) ① (생략)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20. (생략)</p> <p>제6조(기획재정국) ① (생략)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략) 4.법제, 지방의회,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5. ~ 22. (생략) 23.취업정보 제공 등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</p> <p>제7조(복지환경국) ① (생략)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3. (생략) 14.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(신설 2005.03.15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</p> <p>제5조(행정관리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, 1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<u>대외교류에 관한 사항</u> 22. <u>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6조(기획재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제,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</u> 5. ~ 22. (현행과 같음) 23. <u>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7조(복지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삭 제></p>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관련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외교류 업무 담당부서 이관(기획예산과→총무과)에 따른
관련 조문 정비 ⇒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조정
- 나.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이관(복지지원과→자치행정과)에 따른
관련 조문 정비 ⇒ 행정관리국,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조정
- 다. 자활지원 업무 담당부서 이관(취업지원과→사회복지과)에 따른
관련 조문 정비 ⇒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조정

규 칙

서울특별시 증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
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6년 1월 1일

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(인)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1호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
제6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제8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

제12조 제13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의2 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 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8.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

제21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총무과)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총무과)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<u>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6조(자치행정과)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자치행정과) ①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<u>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8조(교육체육과)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교육체육과)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<u>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2조(기획예산과)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</p> <p>14. ~ 21. (생략)</p>	<p>제12조(기획예산과)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<u><삭 제></u></p> <p>14. ~ 2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2(취업지원과) 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1. ~ 12. (생략)</p>	<p>제15조2(취업지원과) 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삭 제></p> <p>1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복지지원과)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</p> <p>11. (생략)</p>	<p>제19조(복지지원과)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)</p> <p>10. <삭 제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사회복지과)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7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0조(사회복지과)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</p>
<p>제21조(여성가족과)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1조(여성가족과)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</p>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
관련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한 부서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

- 1) 대외교류 업무 담당부서 이관(기획예산과→총무과)에 따른
관련 조문 정비(안 제5조 및 제12조)
- 2)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이관(복지지원과→자치행정과)에
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 및 제19조)
- 3) 자활지원 업무 담당부서 이관(취업지원과→사회복지과)에
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5조의2 및 제20조)

나. 조직변동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
담당사무 명문화

- 1) 도서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분장 명문화
(안 제8조)
- 2)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근거 마련(사무분장사항 신설) (안 제21조)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7호

고 시

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2. 31.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건 명 :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

2. 결정항목

가.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「소득세법」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·고시하는 가액

나. 건축물별 시가표준액

- 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- ②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
- ④ 가감산특례
- ⑤ 증·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
-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⑧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

3. 세부결정사항

중구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6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4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